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100-000-2025 0354 1865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105-87-26271 주식회사 엔에이치엔여행박사 윤태석	피보험자	202-82-55510 한국여행업협회
보험가입금액	금 이억오천만 원정 ₩250,000,000-	보험료	₩709,370- ■ 일시납 □ 분납
보험기간	2025년 06월 29일부터 2026년 06월 28일까지 (365 일간)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여행업자 영업보증금 보증		
특별약관	1. 신용카드이용보증보험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종합여행업		
주계약내용	[행정행위내용] 인허가종류 인허가조건 인허가기간 소재지 인허가번호 인허가보증금액 여행업의 등록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2025년 06월 29일부터 2026년 06월 28일까지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0 14층 (구로동, 지밸리비즈플라자) ₩250,000,000-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하는 내용'이 '주계약상보증이 필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발급사실 및 보험약관, 보상심사 진행사항은 회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우리 회사는 인·허가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인·허가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본 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제공됩니다.

2025년 05월 20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 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사 장

이명준



증권 발급	대리점	대리점명	MDM
	모집자 고유번호	방현옥	19960869110074 (02-720-2227)
	지점	광화문지점	성지민 02-734-0021
		서울 종로구 종로 1 9층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대한민국 정부 인지세 200원
종로세무서장
인쇄승인 제2003-1호

SGI was rated "A+(stable)"
by S&P Global Ratings

"AA-(Stable)"
Fitch Ratings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사)한국서비스진흥협회

ISO 37301
ISO 37001

준법경영시스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한국경영인협회 인증기업

-00000-

후면

보험약관 주요내용

※ 세부사항은 보험약관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증받은 '계약상 채무' 또는 '법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보험기간 안에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나 전쟁·내란·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계약자의 변경
 3. 피보험자의 변경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意的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준거법]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보상서비스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www.sgic.co.kr)** 또는 보험금청구접수부서를 통해 보험금 청구 관련 필요서류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접수가능)하시면 보상심사가 진행됩니다.

보험금청구접수부서(담당부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보상1센터

02-3671-8115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심사를 위해 심사자료 추가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인터넷, 우편, 방문)

▶ 접수 & 보상담당자 지정

▶ 보상심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 'SMS' 'e-Mail' 발송에 동의하시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보상심사 진행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부터 '자료제출', '담당부서 조회' 및 '진행사항 확인'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경로 : 홈페이지(www.sgic.co.kr) > 보상서비스 > 보상안내 / 보험금 청구 / 보상자료 제출